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의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2.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기안전점검의 실시
3.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4. 전기설비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기안전문화운동의 추진
5. 전기설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6. 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일 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기관련 기관·단체의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
2.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자문기구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① 전기안전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기안전관리 정책·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운영 등) ① 전기안전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기안전자문기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전기안전자문기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사계획의 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전력을 공급받은 가설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근린생활시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5.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가 신청하면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가 그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법 제13

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이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 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상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 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 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고시원업 : 구획된 공간에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나.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다. 수면방업 :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한다)

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1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한다)

제10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6.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다만, 전기공급의 중단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전기설비가 멸실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저압전기설비에 한해 개선·교체 및 복구공사를 할 수 있다.

2. 누전·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임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

제11조(손실 보상)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는 검사·점검 등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가 설치된 상호명(상호명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명으로 한다) 및 소재지

2. 전기설비 현황(수전설비의 전압, 용량 및 발전설비의 전압, 용량)

3. 전기설비 검사·점검의 연월일 및 결과

4. 전기설비 검사자 또는 점검자 성명

5. 전기안전관리자 점검의 연월일 및 결과

6. 전기안전관리자 성명(선임형태, 업체명, 교육현황)

7.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14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요건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의 요건을 말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4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5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나 자가용전기설비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안전공사의 운영재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공사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점검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방점검의 대상

2. 재난 예방점검의 내용

3.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4.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예산

제17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점검 현황 관리

2.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3.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교육현황 관리

4. 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현황 관리

5. 법 제29조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 관리
 6.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중대사고 현황 및 전기재해 통계의 생성 및 관리
 7. 그 밖에 전기안전관련 정보의 효율적 확인 및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2.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 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 나. 재산피해가 3억원[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價額)에 따른다] 이상인 화재사고
-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 제19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전기재해통계(이하 “전기재해통계”라 한다)를 1년 단위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 ②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화재사고에 관한 현황
 2. 감전사고에 관한 현황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및 안전관리정책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설비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신고의 접수(제2항제1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신고의 접수
 2. 전기설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법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4. 법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5.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업무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9조제4항제12호의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여러 사람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별표]

[별표 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3]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4]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제14조제5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 (제12조제1항 관련)

분 야	공개 항목
1. 전기설비 검 사 · 점 검 결과	가. 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이력정보 나.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이력정보 다. 법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이력정보 라.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이력정보 마. 법 제12조에 따른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 이력정보 바. 법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이력정보 사. 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점포 점검 이력정보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이력정보 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 이력정보 차.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및 안전등급 변경 이력 정보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가. 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설비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5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3. 기타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 (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춘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3. 장비	<table border="1"> <tr> <td>공용 장비</td><td>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춘 것 가. 계전기 시험기: 2대 나. 절연내력(絶縁耐力) 시험기(적류 60kV 또는 교류 30kV): 1대 다. 절연유(絶縁油) 내압 시험기: 1대 라.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 1대 마.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2대 바. 회로 시험기: 2대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대 자.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 측정 및 저장 가능할 것): 1대 차. 고압절연장갑: 3켤레 카. 절연장화: 3켤레 타. 절연안전모: 3개</td></tr> <tr> <td>개인 장비</td><td>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클램프미터, 고압 · 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 1인당 각 1대</td></tr> </table>	공용 장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춘 것 가. 계전기 시험기: 2대 나. 절연내력(絶縁耐力) 시험기(적류 60kV 또는 교류 30kV): 1대 다. 절연유(絶縁油) 내압 시험기: 1대 라.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 1대 마.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2대 바. 회로 시험기: 2대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대 자.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 측정 및 저장 가능할 것): 1대 차. 고압절연장갑: 3켤레 카. 절연장화: 3켤레 타. 절연안전모: 3개	개인 장비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클램프미터, 고압 · 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 1인당 각 1대
공용 장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춘 것 가. 계전기 시험기: 2대 나. 절연내력(絶縁耐力) 시험기(적류 60kV 또는 교류 30kV): 1대 다. 절연유(絶縁油) 내압 시험기: 1대 라.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 1대 마.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2대 바. 회로 시험기: 2대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대 자.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 측정 및 저장 가능할 것): 1대 차. 고압절연장갑: 3켤레 카. 절연장화: 3켤레 타. 절연안전모: 3개				
개인 장비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클램프미터, 고압 · 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 1인당 각 1대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항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 (제14조제3항 관련)

구분	요건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5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1명 이상
3. 장비 가.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추 것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2) 계전기 시험기 3) 절연유 내압 시험기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5) 특고압 COS 조작봉 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 가능할 것) 8) 고압절연장갑 9) 절연장화 10) 절연안전모 나. 개인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추 것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2) 접지저항 측정기 3) 클램프미터 4) 저압검전기 5) 고압 · 특고압 검전기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3켤레 3켤레 3개 7대 7대 7대 7대 7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3켤레 3켤레 3개 5대 5대 5대 5대 5대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항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고,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 · 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해야 한다.
4.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 (제14조제5항 관련)

장 비	수 량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1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1
3. 접지저항 측정기	1
4. 클램프미터	1
5. 저압검전기	1
6. 고압 및 특고압기	1
7. 계전기 시험기	1
8.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
9. 고압절연장갑	1
10. 절연장화	1
11. 절연안전모	1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호	80만원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호	80만원
3. 법 제12조제4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3호	50만원
4. 법 제12조제5항(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200만원
5. 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2호	200만원
6.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3호	200만원
7.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4호	200만원
8. 법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4호	50만원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5호	80만원
10.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5호	200만원
11.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6호	50만원
12.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7호	50만원
13. 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8호	50만원
14. 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9호	50만원
15.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6호	200만원

16.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0호	50만원
17.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1호	50만원
18.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2호	80만원
19. 법 제26조제2항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7호	200만원
20.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8호	200만원
21.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9호	200만원